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백년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 신설〉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36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백년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 신설	2
※ 참고자료	
1. 온누리상품권 개요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0.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상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으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조합과 마찬가지로,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1. 백년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 신설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¹⁾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u> <u>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한다.</u>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7. 17.)(법률 제20053호, 2024. 1. 16.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²⁾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의 상인 중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별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음.

현재는 소상공인의 점포가 전통시장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점포 소재지에 구애받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입법례로는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³⁾이 있음.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26조의3(온누리상품권의 환전) ② 개별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정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7월 17일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053호)⁴⁾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총 2,325개사의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어 있음.

백년소상공인 지정현황

(단위: 개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백년소상공인	71	300	582	829	405	138	-	2,325
백년가게	71	204	339	439	230	86	-	1,369
백년소공인	-	96	243	390	175	52	-	95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한 실태조사⁵⁾에 따르면, 백년소상공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원가 상승(66.2%)’, ‘인건비 부담(46.0%)’ 외에도 ‘매출 감소(34.8%)’와 ‘고객 감소(17.9%)’ 등이

제29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백년소상공인의 정의)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
-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지정 및 지정의 취소)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 신설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 사업장 시설 개선, 포상 등 근거 신설
-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범위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범위에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추가,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등 신설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2024.6.

지목되었고, 향후 육성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백년소상공인에 특화된 지원정책 수립 및 사업활동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이 점포 소재지와 무관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면 백년소상공인의 경영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매출 증진 및 내수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일정 범위의 구역(전통시장 등)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에 가맹점 등록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이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및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이 있는 백년소상공인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온누리상품권은 당초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판매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는데, 가맹률 저조 및 사용처 부족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부진⁶⁾한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온

6) 2023년 기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은 지류(80.0%), 충전식카드(38.4%), 모바일(37.8%)이며, 2023년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은 목표(4조원) 대비 71.3% 수준인 2.85조원임.

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 신설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백년소상공인에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정부는 2024년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매출 향상 지원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용성 제고를 통한 소비 촉진’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맹 제한업종 축소⁷⁾,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제도개선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465

7) - 제한업종 축소: [기존] 40종→[개선] 28종(단,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장 등에서만 이용 가능)
- 가맹제한 해제: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한방·치과),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등

8) -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 등 + 밀집기준 중소기업부와 협의
-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밀집기준 지정

【참고자료】

1

온누리상품권 개요

- **사업 목적** :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하고 환전이 편한 전국형 상품권을 발행·유통하여 상인 매출기반 확대('09년 ~)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 주요 내용

- (예산현황) '24년 351,348백만원

* 연도별 지원예산(억원) : ('20) 4,382 → ('21) 2,956 → ('22) 2,915 → ('23) 2,898

- (가맹점) 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 (발행권종) 지류 상품권 + 모바일 상품권 + 카드형 상품권 등 3종류 운영

- 지류 : 가맹점에서 지폐처럼 상품 및 용역대금 지급(5천원·1만원)
- 모바일 : 전용 앱(온누리페이)에서 구매(충전) 후, 가맹점에서 QR·바코드로 스캔하여 결제(금액을 이체)
- 카드형상품권 : 전용 앱(온누리상품권)에서 구매(충전) 후, 고객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최대 10개 등록)로 결제

* 최초 지류로 시작('09~)하였으나 간편결제 등 新결제방식의 확산, 지류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등을 목적으로 모바일 상품권('19.9) 및 카드형 상품권 도입('22.9)

구분	 지류	 모바일	 카드형
판매방식	시중 16개 금융기관 방문 구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전용 앱(온누리페이) 구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전용 앱(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 및 구매한도	(할인율) 상시 5% (구매한도) 월 150만원	(할인율) 5 ~ 10% (구매한도) 월 200만원	(할인율) 5 ~ 10% (구매한도) 월 200만원